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법무부, 은행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Wachovia Corporation의 SouthTrust Corporation에 대한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경쟁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자산을 매각할 것에 합의했다. 그 합의된 내용은 Wachovia가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 있는 SouthTrust 지점들 18개를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들의 총 예탁액은 약 5억 9천 2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매각으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의 은행 이용고객들은 앞으로도 계속 경쟁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또한 Wachovia는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지역에서 기업결합의 결과로서 폐쇄하기로 한 지점들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 때 은행사업자의 매

수희망가격이 비은행사업자의 매수희망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은행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DOJ는 연방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특정 지점들과 그에 예치된 예탁금을 매각한다면 DOJ 독점금지국에서는 기업결합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Wachovia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내 제4위의 금융지주회사이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은 4,110억 달러이며, 총 예탁액은 2,240억 달러에 달한다. Wachovia는 뉴욕과 플로리다를 포함한 11개 주에 2,617개의 지점과 4,400개의 자동지급기를 보유하고 있다.

SouthTrust는 알라바마주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530억 달러의 자산과 350억 달러의 예탁액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와 버지니아주에 740개의 지점과 894개의 현금지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2004. 8. 25. 연방법무부

일본 국적자, 국제 카르텔 참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

일본 화학회사인 Daicel Chemical Industries Ltd.의 Hitoshi Hayashi가 17년간 음식용 방부제 산업에서 국제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에서 3개월의 징역과 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DOJ는 발표했다. 그러나 Hayashi에 대한 이러한 자유형과 벌금형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Hayashi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미국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해지는 최초의 일본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데,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인 Hayashi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소르빈산염에 대한 가격고정과 수량을 할당하는 카르텔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Hayashi는 소르빈산염에 대한 반경쟁적 행태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DOJ와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DOJ가 국가간 한계를 넘어 독점금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 이든 미국에서의 사업과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담합참가자들을 조사하여 소추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의 가격혁신 및 수량할당에 관한 담합은 미국 내 상거래에서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DOJ는 보고 있다. 약 2억 달러 가치의 소르빈산염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소르빈산염은 구운 제품, 와인 및 치즈와 같은 물기가 많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이다.

Hayashi는 원래 2001년 1월에 다른 세 명의 외국인과 함께 소르빈산염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 관할권을 넘어서 도피중에 있었다. 이번에 Hayashi가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난 2001년 1월에 기소된 사건은 각하된다.

이 카르텔에 참가했던 유럽, 일본 및 미국 회사들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들은 합계 1억 3천 2백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James M. Griffin 형사집행 부국장은 “DOJ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국제적 카르텔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Hayashi가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4년 7월 22일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벌금액은 범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2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와 같은 지역 FBI가 협조하여 이루어낸 조사의 결과이다.

2004. 8. 5. 연방법무부

De Beers Centenary AG 가격카르텔 고발에 대해 유죄 답변

산업용 다이아몬드의 가격고정을 공모한 것에 대해 1,000만 달러의 지불명령이 내려졌다.

De Beers Centenary AG가 금일 유죄답변을 하여, 미국 기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산업용 다이아몬드의 가격고정을 공모한 것에 대한 오랜 기간의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동 사에 1,000만 달러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1994년 법무부의 고발을 해결하게 되는 답변협정(plea agreement)은

금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1994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 대배심은 De Beers Centenary가 1991년 및 1992년에 세계의 다양한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품의 카다로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하여 동 사를 기소했다. De Beers의 공모자인 General Electric은 본 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을 받아 무죄로 판결받았다. 스위스 루체른에 본사를 둔 De Beers Centenary는 법원에는 동 사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본 건의 재판을 받지 않았다. 금일 제출된 답변협정 결과, De Beers Centenary는 본 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동의한 것이 된다.

다이아몬드 공구제조업자는 도로건설, 석재 재단 및 연마, 자동차 제조업, 광업 및 석유채굴이라는 다양한 제조업용 및 건설용 기기의 재단용·연마용 공구 중에서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답변협정을 할 즈음 De Beers Centenary는 기소장대로 세계에서 판매된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품 카다로그 가격의 인상을 공모하는 혐정을 맺은 것을 인정했다. 공모를 조장하기 위해 De Beers의 대리리를 맡고있는 공무원, 종업원 및 대리인이 회의에 출석, 공모자와의 연락 및 회합을 하고 상세한 장래의 가격정보 및 계획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였다. 답변협정에

의하면 De Beers Centenary와 공모자는 실질상 De Beers Centenary의 대리를 맡고있던 세관직원을 구실로 공모자간에 상세한 장래의 가격정보 및 계획을 교환하였다.

「금번의 유죄 답변은 위법한 가격 카르텔에 대항하는 법무부의 끈기를 반영한 것이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R. Hewitt Pate 국장은 언급했다. 「관할권의 문제로 법무부는 10년간 De Beers Centenary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이 답변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법무부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De Beers Centenary 및 De Beers Consolidated Mines Ltd.를 포함하는 다수의 관계기업은 미국 기타 다른 나라에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조, 유통 및 판매한 많은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였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고탄소 소재를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키기 위해 극도의 고압·고온을 가함으로써 제조된다.

De Beers Centenary는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고발되고, 위반행위가 행해진 당시의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은 1,000만 달러였다. 벌금의 법정상한액은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 또는 손해액 둘 중 어느 하나가 셔먼법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2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2004. 7. 13.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EU

EU위원회, 일본 제약회사간 기업 결합 승인

EU위원회는 기업결합 규제절차에 의거하여 신고된 Yamanouchi Pharmaceutical Co., Ltd(이하 Yamanouchi)와 Fujisawa Pharmaceutical Co., Ltd(이하 Fujisawa)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Yamanouchi와 Fujisawa는 일본의 제약회사들로서 기업결합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Yamanouchi가 존속하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을 하면서 당사회사들은 유럽경제지역(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내에서 법적 승인을 얻기 위해 EU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회사들은 유럽에서 상당한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EU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회사들의 사업활동은 대부분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며, 이들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는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있으므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 상황임을 인지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의사의 처방없이 팔 수 있는 약(over-the-counter pharmaceutical)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

지만, 유럽경제지역 내에서는 그러한 소매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EU위원회는 EU에서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004. 8. 18. EU위원회

EU위원회, 종자회사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기업결합 규제절차에 따라, EU위원회는 스위스 종자회사인 Syngenta Crop Protection AG(이하 Syngenta)가 네덜란드 종자회사인 Advanta B.V.(이하 Advanta)를 기업결합 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 승인에는 특히 사탕무 종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Advanta의 전체 유럽 내 지점들을 매각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Syngenta는 Syngenta AG의 계열사로서, Advanta와 마찬가지로 각종 종자에 대한 품종 개량,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EU역내 회원국들의 국내 시장들에서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사탕무 종자는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이태리에서, 옥수수 종자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 해바라기 종자는

헝가리와 스페인에서, 보리 종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완두콩 종자는 영국시장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EU위원회는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시장에서 제2위 사업자와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매우 강력한 시장 주도자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탕무 종자시장에서는 유럽내 3대 육종업자 체제가 2사업자 체제로 바뀌게 된다.

EU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Syngenta는 Syngenta와 Advanta가 중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내 모든 관련시장에서 Advanta의 전체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제의했다.

2004. 8. 17. EU위원회

유럽제1심법원, 광관계조업자에 대해 제재금을 감액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광관계조업자에게 부과한 제재금을 1,300만 유로로 감액했다.

위원회는 위반의 전 기간을 포괄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1999년 12월 8일 결정으로 유럽위원회는 석유업계에서 사용되는 이음새 없는 탄소강 파이프 및 튜브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유럽기업 4개, 일본기업 4개)에 대해 EC경쟁법 위반으로 총액 9,900만 유로의 제재금

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위원회는 당해 기업끼리 역내시장에서 협정을 체결한 기업 이외에는 표준세션(細線) 파이프 및 튜브(석유국 파이프 제품(OCTG)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프로젝트 라인파이프」 튜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협정은 일·유 클럽(Europe-Japan Club)으로 알려진 당해 기업의 회합에서 체결되었다. 위반행위의 기간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1977년에 최초로 회합을 가졌지만, 1977년부터 1990년 사이 EC와 일본간에 있었던 수입 제한에 관한 자주적 합의가 유효했기 때문에 1990년의 초두(初頭)가 위반행위의 개시 시기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위원회에 의하면 1995년 초두에는 위반행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한 유럽의 제조업자가 영국시장에서 경쟁하는 OCTG, 즉 아직 나사가 없는 파이프 및 튜브의 판매에 관한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이 일·유 클럽에서의 합의의 적용을 보증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해 기업에 대해 추가의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8사 중 7사, 즉 Mannesmann-röhren-Werke, Corus UK, Dalmine, JFE Engineering(구 NKK), Nippon Steel, JFE Steel(구 Kawasaki Steel) and Sumitomo

Metal Industries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법원은 자주적인 제한협정이 존재했던 것으로부터, 1977년을 위반개시 시기로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제1심법원은 동 사안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자주제한협정이 종료된 시기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그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과 일본기업이 적어도 일본기업에 관한 당해 국제협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담으로써 법원은 동 협정이 1990년 종료까지 유효했다는 견해를 취했다.

일본기업도 위반의 종기에 대해 다투었다. 법원은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일본 사업자의 사안에 있어서 위원회가, 위반행위가 1994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던 점 때문에 상기의 1년 단축에 더하여 6개월 위반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결과로서 제1심법원은 위원회가 1991년 1월 1일 이전 및 일본기업의 사안에 있어서는 1994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한하여 동의결정을 무효로 하였다.

법원은 또한 제재금 총액 결정에 있어서 유럽 제조업자의 제2의 위반행위(영국시장에 관한 계약)의 계산을

| 기업 | 위원회에 의해 부과받은 제재금(EUR) | 법원에 의해 감액받은 제재금(EUR) |
|---------------------------|-----------------------|----------------------|
| Mannesmannröhren-Werke | 13,500,000 | 12,600,000 |
| Corus UK | 12,600,000 | 11,700,000 |
| Dalmine | 10,800,000 | 10,080,000 |
| JFE Steel | 13,500,000 | 10,935,000 |
| Nippon Steel | 13,500,000 | 10,935,000 |
| JFE Engineering | 13,500,000 | 10,935,000 |
| Sumitomo Metal Industries | 13,500,000 | 10,935,000 |
| Vallourec | 8,100,000 | 8,100,000 |
| 합계 | 99,000,000 | 86,220,000 |

※ 상고는 판례의 논점에 한하여 피심인이 통지 2개월 이내에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EC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04. 7. 8. 유럽제1심법원 판결문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상황을 처리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처리는 논리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유럽의 제조업자에게 과하는 제재금의 총액을 늘리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재금의 총액은 동 사안에 있어서 증액하는 것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가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법원은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자간에 불공평한 처리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일본의 각 제조업자에게 과한 제재금을 10% 감액하기로 했다.

제1심법원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다른 의견 모두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 케이블방송시간 경영권 취득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케이블망 사업자인 Kabelnetzgesellschaft Kabel Deutschland GmbH(이하 KDG)가 지역 케이블망 사업자인 Kabelnetz NRW HoldCo GmbH(이하 ish), Kabel BW Holdings GmbH(이하 KBW) 및 iesy Repository GmbH(이하 iesy)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KDG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경영권 취득 계획은 무료 TV 및 유료 TV시장을 포함한 TV 프로그램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8월 23일 관련 당사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관련 회사들은 절차에 따라 카르텔청의 경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그 후 이 진술들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은 2004년 10월 7일까지 최종 심결을 내려야 한다.

KDG는 도이치텔레콤(DT)이 독일 내 함부르크 등 6개 지역에서 행하고 있던 광대역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들 지역에서 KDG는 방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고 있다. KDG는 독일내 약 1천만 가구에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DG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독일내 다른 지역들에서는 광대역망을 위의 세 개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ish는 북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약 4백만 가구에, KBW는 바덴-뷔템베르크 지역에서 약 2백만 가구에 대해, 그리고 iesy는 헤센 지역에서 약 1백만 가구에 광대역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들을 비교해 보면, KDG는 이미 광대역 케이블망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추가 조사

에서, 프로그램 제공자와 관련하여 TV 신호 송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즉 케이블, 위성 및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대체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무료 TV나 유료 TV 모두 TV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체 가구 중 약 56%가 케이블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자들의 입장에서 케이블을 통한 프로그램 전송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케이블망을 통한 전송을 다른 전송 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독일에서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실상 매우 어렵고, 만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더욱이 KDG는 디지털 TV 프로그램을 코딩 및 디코딩 하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코딩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코딩 하기 위한 셋톱박스(디코더) 및 셋톱박스를 통제하는 스마트 카드로 구성된다. 셋톱박스는 코딩시스템과 관련하여 KDG의 서비스 범위를 넓게 만들어준다. 현재는 유료 TV 프로그램만 코딩을 하고 있는데, KDG는 앞으로 무료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코딩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무료 TV를 시청하기 위해 KDG의 라이선스를 받은 셋톱박스가 있어야만 한다

고 하면,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셋톱박스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KDG는 자신의 유료 TV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톱박스를 조정하여 수익이 많이 남는 유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KDG의 이러한 전략을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은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KDG는 이미 독일내 여섯 지역에서 자신의 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연방카르텔청에 신고한 바와 같이 다른 세 케이블망 사업자와 기업결합까지 하는 경우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KDG는 우선 자신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히려 할 것이고, 결국은 독일 전지역을 자신의 케이블망 아래에 두고자 하려 할 것이다. 또한 KDG는 현재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도 운영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플랫폼의 통제권 하에 둘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업결합은 KDG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지역 케이블망 사업자들의 잠재적 경쟁을 상당히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볼 때,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기업결합이 다른 인접시장의 경쟁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유료 TV시장에서의 유희경쟁은 케이블망 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을 하지 않고 그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소규모 지역 사업자와 대규모 망사업자인 KDG는 망고도화,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인터넷 전환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계획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KDG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장은 전국망을 형성하는 것만이 미디어 네트워크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복수의 케이블망 사업자들에 의해 영위되는 상이한 사업모델에 관한 경쟁은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독점은 이러한 진보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세 개의 케이블망 사업자들을 기업결합 함으로써만 인터넷 사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KDG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연방카르텔청은 말했다.

2004. 8. 24.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미 FTC와 공조하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미국에 있는

General Electric Company(이하 General Electric)가 InVision Technologies, Inc.(이하 InVision)의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 계획은 미국과 유럽내 다른 국가들의 경쟁당국에서도 조사를 받았으며, 연방카르텔청은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조사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비파괴 검사를 위한 X선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쟁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상품을 파괴하거나 그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은 채 물체의 결합을 조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General Electric과 InVision이 결합하는 경우 독일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연방카르텔청은 InVision이 그 계열사들을 동종 영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기업결합 규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 회사들은 InVision의 각 자회사들을 매각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긴밀한 협조 속에서 개별 조건과 시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에 대비한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협의의 거쳤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사례는 경쟁당국간 국제적 차원의 공조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승인 조건에 관한 협정을 주도하는 경쟁당국들과 보다 원활한 협상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에도 사업자들은 경쟁당국들간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문서를 통해 일찌감치 정보를 교류했고, 영업 비밀에 관한 권리 행사도 보류하는 등 중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4. 8. 19.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취위, 주식회사 천연의 온천촌에 대해 부당표시로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공중탕의 내용과 관련된 표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주식회사 천연의 온천촌이 기재해 오던 사실이 경품표시법 제4조(우량 오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조치를 했다.

피심인은 후쿠오카현에 있는 「주식회사 천연의 온천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송방탕(松邦の湯)과 천내탕(泉乃湯)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천연의 온천촌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중탕의 주변에 설치한 간판, 목욕탕내의 게시판 및 목욕탕 내에서 배포한 광고지에서 「천연의 온천촌」, 「천연 온천」, 「샘질단순 유형천」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해당 공중탕의 욕

조의 온수에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중탕의 욕조의 온수는 온천이 아니고 우물물을 데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량한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또는 사실과는 달리 해당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되는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보임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
2.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그 외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실제의 것 또는 해당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되는 것보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소비자를 오인하기 위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
3. 앞의 2호 이외에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

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지정한 것

2004. 8. 9. 공정취인위원회

「적정한가스거래에대한지침」 일부 개정

공정취인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은 공동으로 지난 2000년 3월 가스사업 분야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위해 독점금지법이나 가스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적정한가스거래에대한지침」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가스사업 제도개혁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동안 행정상담 사례도 축적되어 가스사업법의 새로운 규정 및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상담해 주었던 사례 등을 근거로 공정취인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본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번 일부 개정을 위해서, 올해 6월 15일에 개정 원안을 공표하고 관계 각 방면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구한 다음,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스사업 분야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본 지침에 근

거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엄정·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경제산업성도 가스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부단히 감시하고, 향후의 경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독점금지법 및 가스사업법상의 취지에 부합하게 앞으로도 본 지침을 재검토할 것이다.

2004. 8. 6.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모리카와 건설외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모리카와 건설주식회사(이하 피심인)에 대해, 2003년 12월 11일 심판개시 결정을 한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수속을 진행해 오다가 2004년 8월 4일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324만 엔을 10월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치바시 및 재단법인 치바시 도시정비공사가 치바시내에 본점을 두는 사업자만을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희망형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도장공사로서 발주하는 설계금액이 2,5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공사(이하 치바시 등이 발주한 특정 도

장공사)에 대해서,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치바시 등이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은 설계금액이 2,5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인 도장공사이다. 그러나 설계금액은 입찰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있어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으므로 낙찰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해 2,467만 5,000엔으로 낙찰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액수가 2,500만 엔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위 물건의 입찰에 참가한 지명사업자 중에는 예전부터 사업자로서의 윤리에 반해 동종 타사업자의 협력 요청을 승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 입찰시에는 협력을 요청한 회사의 입찰금액을 밀도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자신이 수주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협력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명사업자 중 주식회

사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협력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상황이 어려워서 수주를 원한다고 하여 협력 요청을 단념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입찰에서는 피심인 외 2사에 의한 경쟁이 있었던 것이므로 담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본 건과 같이 입찰과 관련되는 수주조정행위는, 이것에 참가한 관계자가 입찰 시점에서 설계금액을 파악하는지에 관계없이 독점금지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어 동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거래분아가 입찰 시점에서 피심인이 알 수 없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확정되어 그 결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설계금액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2,500만 엔이라고 하는 금액은 본 건에 있어서 설계금액으로서의 금액이며 낙찰금액에 대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동 금액을 밑돌았다고 해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본 건과 같은 입찰에 있어서의 수주조정의 사안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말

하는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이란 위반행위를 실현하는 개별수주조정절차에 상정되어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주조정이 완전히 끝나 수주예정자가 1사에 집약될 수 있었던 안건에 한정되지 않고, 수주조정을 들어갔더니 결과적으로 경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입찰 가액이 완전한 경쟁상태하에서의 가액보다 높아지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효과가 생긴 안건도 이것에 포함된다. 피심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수주조정을 한 것 자체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

수주조정절차를 행한 결과 이 물건에 대해 경쟁자가 2사 또는 3사로 한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것을 전제로 한 피심인의 입찰액 또는 낙찰액 수가 7사가 경쟁하는 경우보다 높아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건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지명사업자 전원에 의한 수주조정의 합의를 성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지고 과징금 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04. 8. 6. 공정취인위원회